

해외진출기업 출구전략 및 지원제도 소개

① 추진배경 및 U턴 현황

② U턴기업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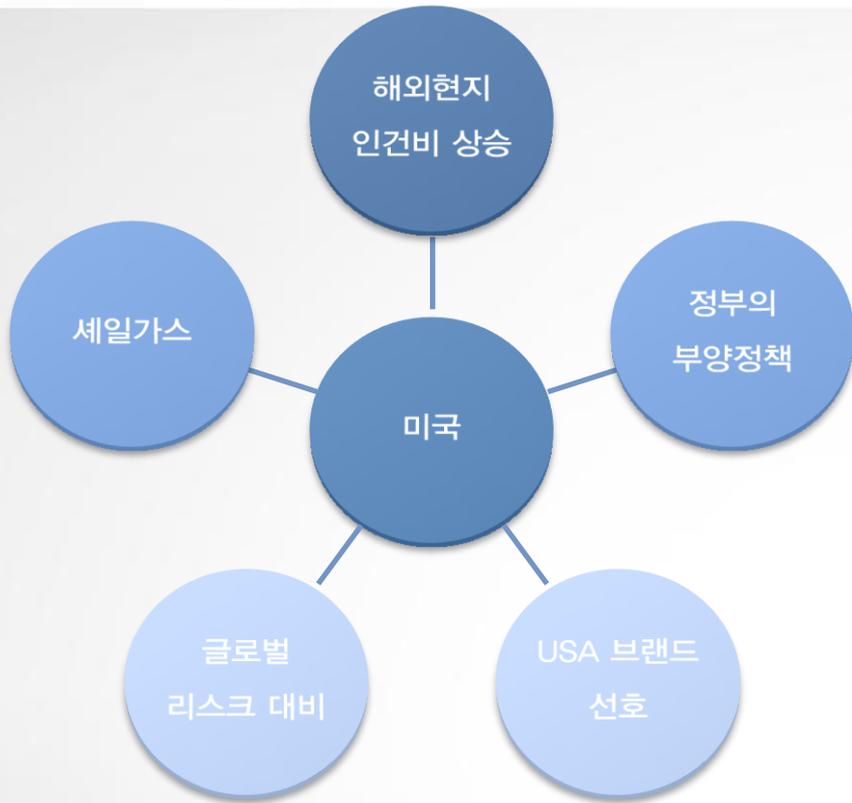
③ U턴기업 지원센터

④ U턴기업 선정요건

⑤ 지원제도

01 | 추진 배경 및 U턴 현황

해외 주요국 U턴사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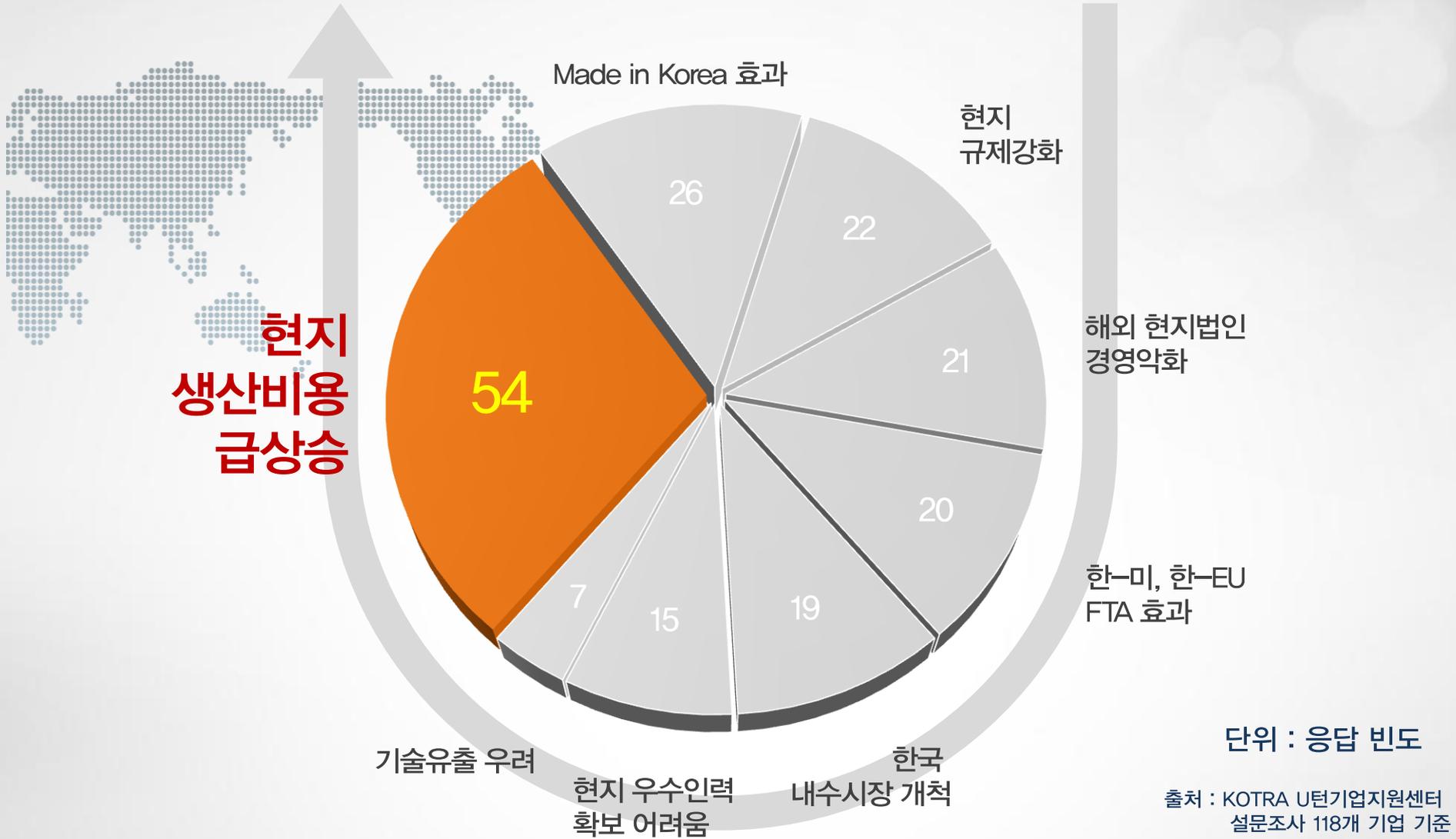
- (포드) 멕시코 픽업트럭 생산라인 이전
- (GE) 중국 세탁기 및 건조기 생산라인 이전
- (애플) 중국 맥킨토시 PC 생산라인 이전

일본

- (다이킨공업) 중국 생산분 25만대 이전
- (파나소닉) 중국 세탁기 등 가전제품 라인 이전
- (샤프) 중국 TV 등 일부 가전제품 생산라인 이전

01 | 추진 배경 및 U턴 현황

국내 U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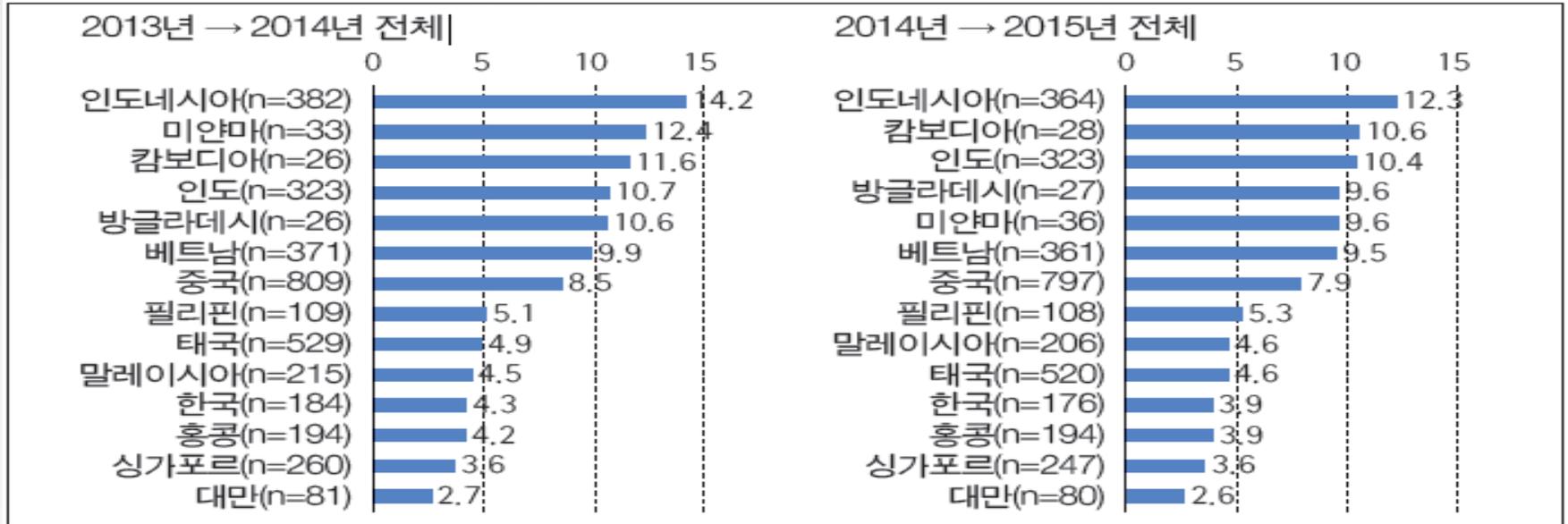


01 | 추진 배경 및 U턴 현황

U턴 요인- 인건비 외 각종 리스크 증가

① 중국·동남아 인건비 상승률

단위 : 개사, %



자료 : JETRO(2014), 재아시아·오세아니아 기업실태조사

② 중국 외투기업 정책 변화 및 규제강화

- 노동정책 변화
 - 2011년 이후 사회보험(공상보험·생육보험·주택공적금) 납부 감독 강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 조세 부담 증가
 - 외상투자기업 세제 우대정책 축소 : 2007년 이후 외국인 투자 기업 조세우대 혜택 폐지
- 환경규제 강화
 - 중국정부의 환경목표 강화에 따른 규제 및 관리감독 증가, 환경설비 비용 부담

01 | 추진 배경 및 U턴 현황

정부의 U턴기업 지원정책

1차

- '12.4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세제, 보조금, 외국인력, 고용보조금 등)

2차

- '13.12월 유턴기업지원 추가대책 발표
(고용보조금, 외국인력지원 보완, 강화)

법제 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3.12.7)
(유턴기업 요건 및 선정제도 등 규정)



“제조업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01 | 추진 배경 및 U턴 현황

MOU 기업 현황

12.4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이후, 7개사와 MOU 체결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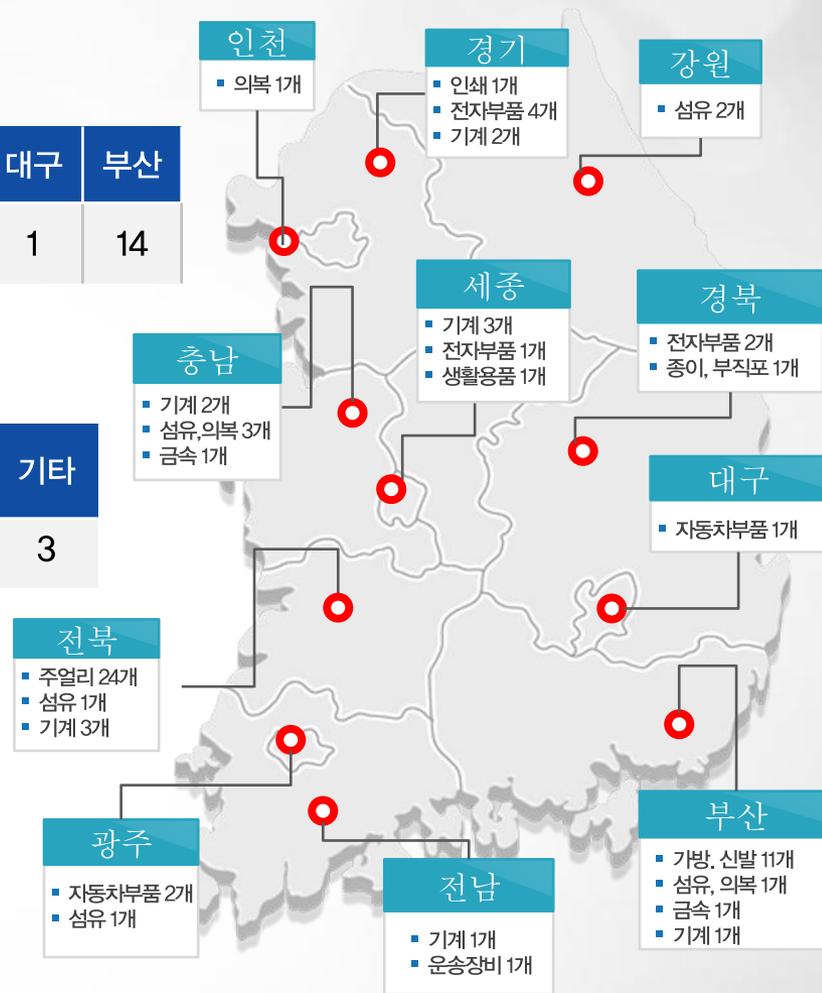
지역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부산
기업수	7	1	2	6	5	30	2	3	3	1	14

업종별

업종	기계	주얼리	섬유/의류	신발	금속	자동차 부품	인쇄	전자 부품	생활용품	기타
기업수	10	25	6	11	4	6	1	7	1	3

국가

지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기업수	69	2	2	1



01 | 추진 배경 및 U턴 현황

U턴 선정 기업 현황

14.03.27, 14개사 최초 선정 후 현재까지 총 30개사 선정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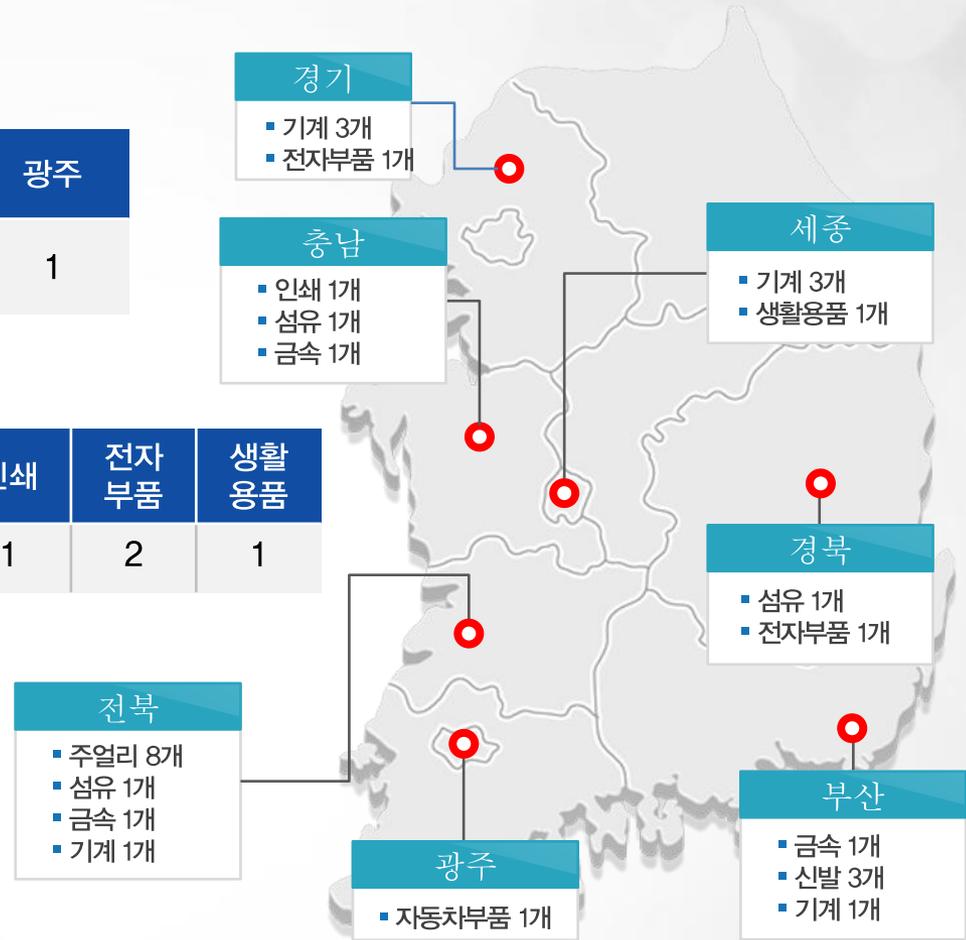
지역	전북	부산	경기	세종	경북	충남	광주
기업수	11	5	4	4	2	3	1

업종별

업종	기계	주얼리	섬유,의류	신발,가방	금속	자동차 부품	인쇄	전자 부품	생활용품
기업수	7	8	3	3	3	1	1	2	1

국가

지역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기업수	29	1	1



02 U턴기업 선정절차

선정 절차

선정 제도란?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여부를 확인(인증)하는 제도
 각 지원제도 신청 시 소관 부처별 국내복귀기업 확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지원 가능



제 5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기업명 : 주식회사 한국기계
법인등록번호 : 123456-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111-22-33333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삼남동
대표자 성명 : 홍길동

위 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과 같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국내복귀 유형

- 유형 1(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유형 2(해외사업장 유지·축소, 기존 국내사업장 미보유)
- 유형 3(해외사업장 축소, 기존 국내사업장 보유)

2. 국내복귀 완료 여부

- 국내복귀 완료기업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완료(년 월 일),
해외사업장 유지, 축소완료(년 월 일)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년 월 일)
- 국내복귀 진행기업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예정, 완료(년 월 일)
해외사업장 유지, 축소예정, 축소완료(년 월 일)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예정, 완료(년 월 일)

2014년 0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02 U턴기업 선정절차 지원 제도 및 국내복귀 완료 기한

▶ 해외사업장 철수 기한(청산, 양도)

선정일 또는 완료일로부터 4년 이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료

4년

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국내사업장 신·증설 미완료기업)

or

②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일(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업)

* 기존국내사업장 미보유 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 철수 또는 유지 선택 가능



▶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2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
(국내사업장 신·증설 미완료기업)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 기한으로 신설기한을 정할 수 있음.)

03 | U턴기업 지원센터 U턴기업 지원데스크

목적

KOTRA 본사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데스크(해외무역관)'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ONE-STOP** 종합 서비스 제공



국내복귀기업 지원 조직망



주요 기능

- ✓ 제도개선, 법·정책 총괄
- ✓ 국내복귀기업 선정서 발급

주요 기능

- ✓ 국내복귀기업 발굴 (국내외 설명회 개최, 광고 홍보 활동 전개)
- ✓ 국내복귀의향기업 종합 상담 (선정요건, 투자환경, 지원제도 등)
- ✓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접수 및 심사
- ✓ 관련 제도조사 및 자료 발간 등
- ✓ 지역별 PM 활동 지원

주요 기능

- ✓ 입지환경 안내
- ✓ 국내복귀기업 발굴
- ✓ 국내복귀기업 애로사항 상시 접수 및 해소
- ✓ 국내복귀기업 건의사항 수렴

04 | U턴기업 선정요건

지원대상 선정요건

U턴 기업이란?

- 해외에서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 또는 유지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이하 U턴법)

① 2년 이상 해외에서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 현지 사업장에서 과거 2년 동안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제조업을 2년 이상 운영하였을 것

② 해외-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내 개인사업자)의 최대지분보유자(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인정 요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축소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유지도 가능)

③ 해외사업장 철수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④ 해외-신·증설 국내 사업장 동일업종 운영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조세·임대료 감면 등) 받은 기업이 아닐것

① 2년 이상 제조사업장 운영 & ④ 해외·국내 사업장 동일업종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



해외
현지법인



한국 법인



한국표준산업분
류
세분류 기준



해외
제조사업장



투자사업장



생산품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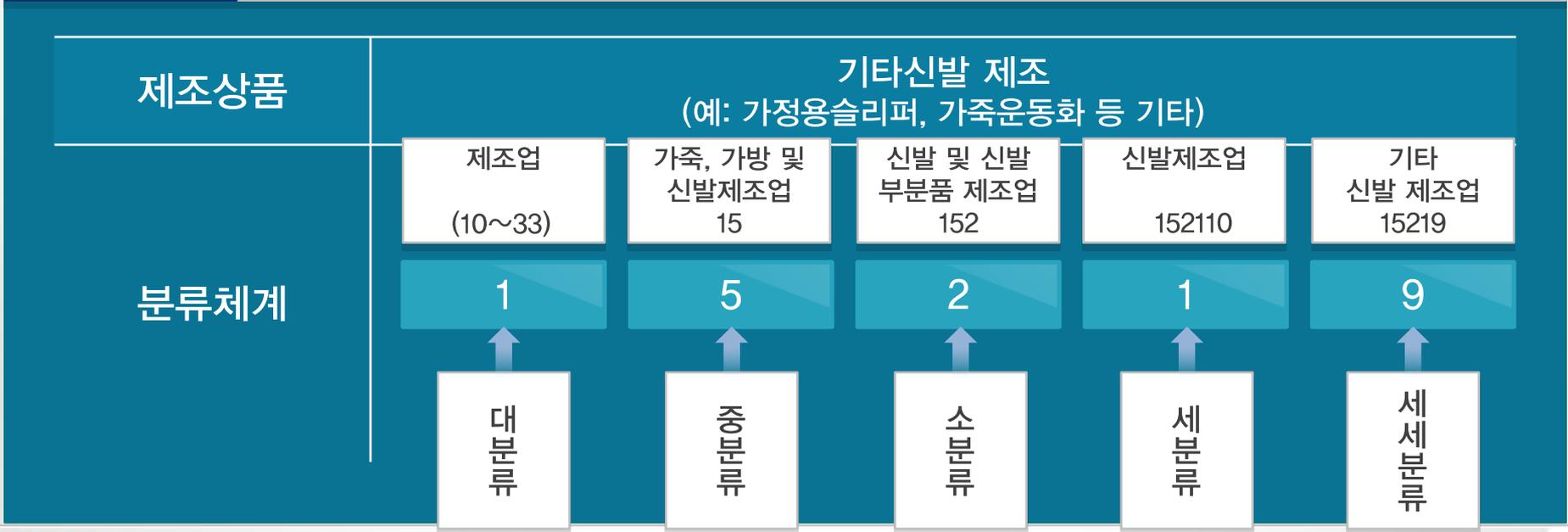
① 2년 이상 제조사업장 운영 & ④ 해외·국내 사업장 동일업종

U턴법상
사업장*이란?

-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하는 곳
 - 제조업 영위를 위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시설 포함)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 * U턴법 제 2조제1의 나목, 제2조제2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 * 통계법 22조



04 | U턴기업 선정요건

② 해외·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

: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개인 또는 법인)이 가~라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대한민국 국민 A
(재외동포 포함)

또는

대한민국 법인 A



합산 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녀)

대한민국 법인 A의 임원

대한민국 법인 A의 관계기업 B

대한민국 법인 A의 관계기업 B의 임원

해외 현지법인



한국 법인
(투자 대상)



조건 1.
30% 이상 지분보유

AND

조건 2.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최대지분 보유자

나) 대표자

다) 임면권 등 주요경영 사항에 영향력 행사

라) 출자총액, 초과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

- 합산대상자로서의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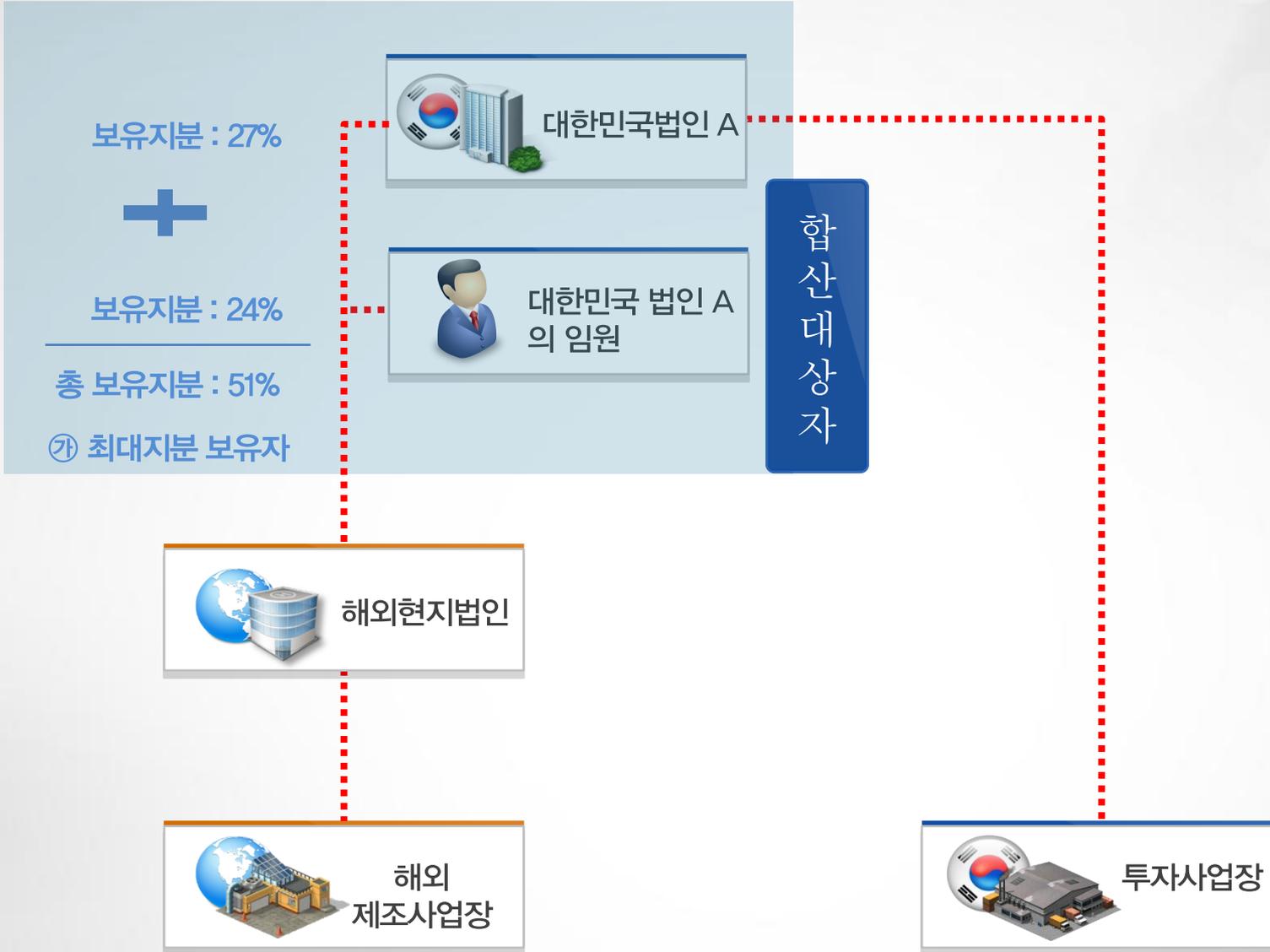
② 해외·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 사례 I



② 해외·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 사례 II



② 해외·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 사례 III



② 해외·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 사례Ⅳ



- 보유지분 : 51%
- ㉠ 최대지분 보유자



04 | U턴기업 선정요건

② 해외·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 사례 V



대한민국법인 A

- 보유지분 : 51%
- ㉠ 최대지분 보유자

- 법인 신설
- 보유지분 : 51%
- ㉠ 최대지분 보유자



대한민국법인 B



해외현지법인



해외
제조사업장



기존
사업장



투자사업장

③ 해외사업장 철수- 기존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 사업장 보유 유무에 따라
해외사업장 철수 유형 선택 가능”

지원 내용

기존 국내
사업장

보유

미보유

해외 사업장

① 청산·양도

② 생산량 감축

③ 청산·양도

④ 생산량 감축
또는 유지

③ 해외사업장 철수- 기존 국내사업장



母기업
대한민국 법인



해외 현지법인
(주회사)

해외
제조사업장

생산품

한국표준산업분
류
세분류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준”

기존
국내사업장

생산품

04 | 지원 대상 요건

③ 해외사업장 철수- 기존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 소유여부 판단 기준

- 국내사업장 신·증설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기존국내사업장(해외사업장과 동일 업종*)의 매각,폐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기업으로 본다 * 국내복귀 지원법 고시제4조 및 제9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세 분류상 동일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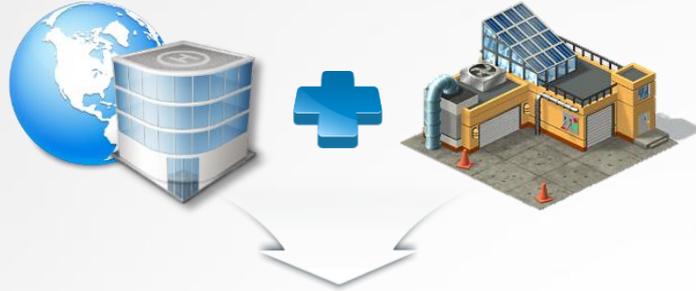
- 검토서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민원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기타사실증명원 등)

04 | 지원 대상 요건

③ 해외사업장 철수- 기존 국내사업장

해외 현지법인

해외 제조사업장



한국 법인

한국 제조사업장



제조 상품	기타신발 제조 (예: 가정용슬리퍼, 가 운동화)				
분류 체계	1	5	2	1	9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조 상품	신발부분품 제조 (예: 신발안창, 구두굽)				
분류 체계	1	5	2	2	0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 세분류가 아님”

04 | 지원 대상 요건

③ 해외사업장 철수- I 청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




해외
현지법인




해외
제조사업장

해산
(해산사유* 발생)

청산절차 개시

법인격의 소멸

사업장 폐업



해산사유

회사의 존속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주주총회 결의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 등

04 | 지원 대상 요건

③ 해외사업장 철수- II 지분양도



양도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

지분양수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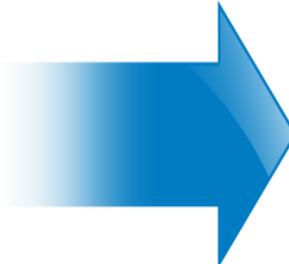



양수인



해외
현지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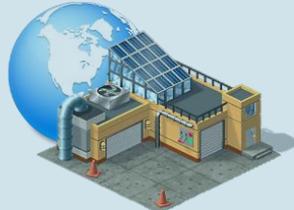
법인(사업장 포함)
지분 "100%" 양도(매각)




해외 현지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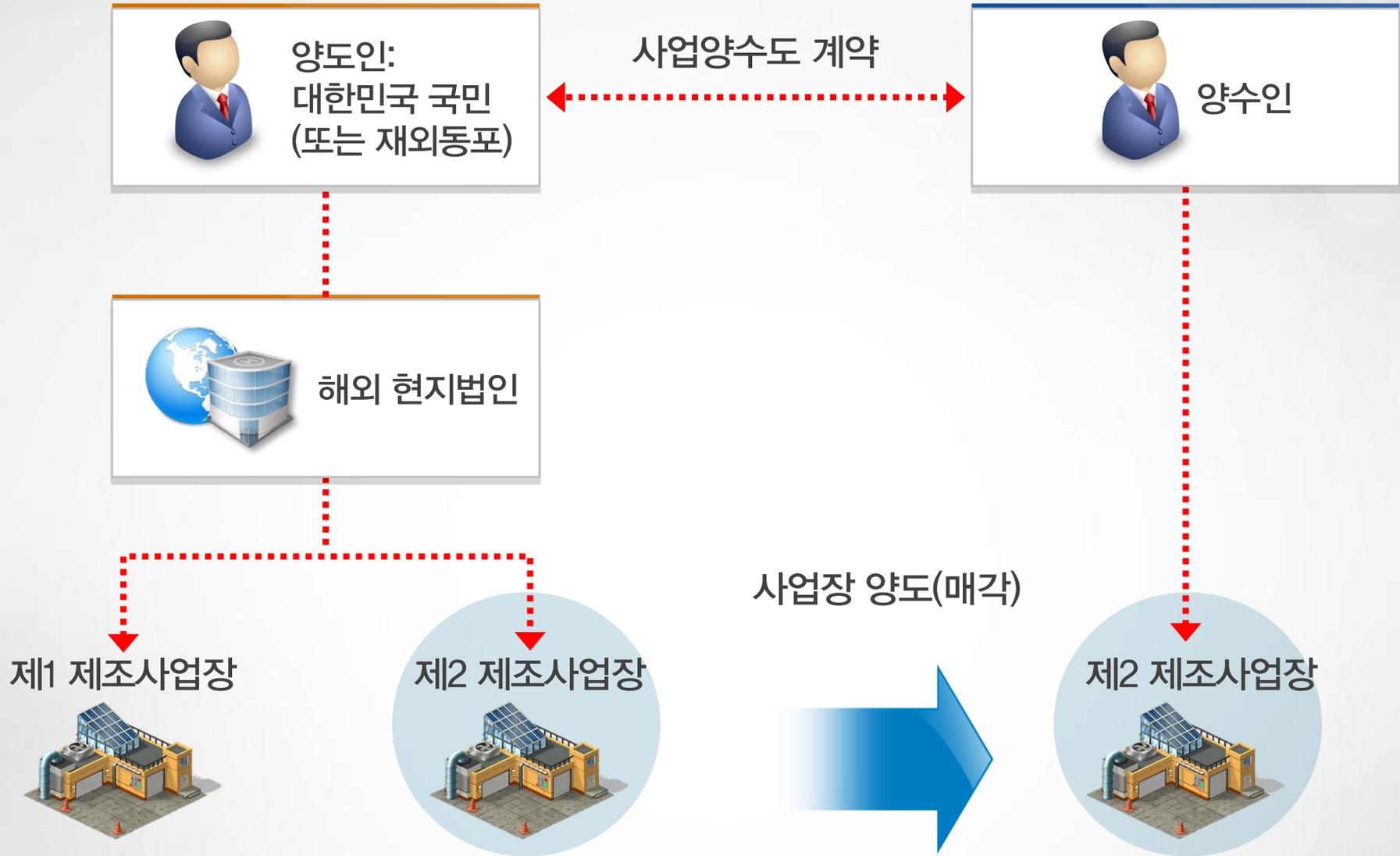
제조 사업장



제조 사업장

04 U턴기업 선정요건

③ 해외사업장 철수- Ⅲ 사업양도



③ 해외사업장 철수- IV 생산량감축

해외
현지법인



해외
현지법인



해외
제조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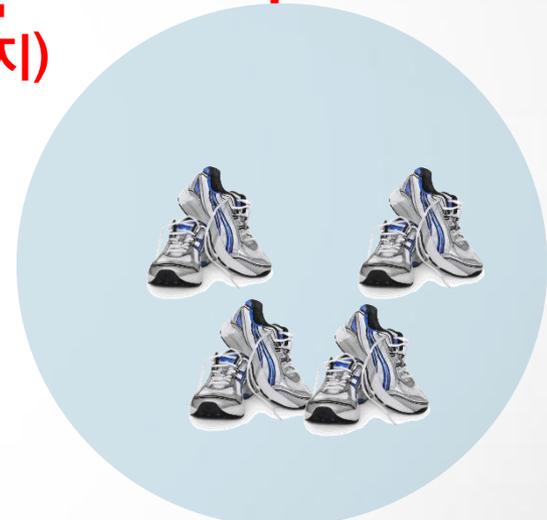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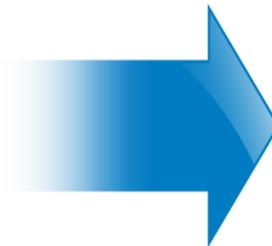
해외
제조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축소 완료 후 3년간 유지)**



축소 개시 전



축소 개시 후

04 | U턴기업 선정요건

U턴투자 사례- I 기존국내사업장 미보유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

- 업태·업종: 제조업·플라스틱표면가공
- 주요생산품: PEF 이형필름

중국
연태

중국현지법인

국내투자 요인

- 국내 내수시장 및 제3국 개척
- 한국과 다수국가(미국, 유럽 등)와의 FTA체결로 인한 관세특수 효과 기대

신설법인 설립

한국법인

충남
예산

유지

제 1 제조사업장



제 2 제조사업장



80억 원투자

투자사업장



➤ 한국에 동일제품 생산 제조사업장이 없으므로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04 U턴기업 선정요건

U턴투자 사례-Ⅱ 기존국내사업장 보유



경북
칠곡

모기업
한국법인
(대한민국법인)

- 업태·업종: 제조업·전자부품가공
- 주요생산품: 디스플레이(LED, PDP) 외장재

청산

국내투자 요인

- 동반진출 하였던 LG의 중국철수에 따른 수요처 상실로 국내 동반 철수

중국
남경

중국현지법인

120억 원투자

제조사업장



기존
사업장



투자사업장



➤ 한국에 동일제품 생산 제조사업장이 있으므로 해외사업장 철수 의무 있음

05 | 지원제도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목적

해외사업장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국진출 한국기업
※ 대상 국가 확대 예정 (베트남 등)

지원 내용

- 최적의 철수 모델 제안(매각, 양도, 축소 등), 대행(청산, 축소, 지분양도·매각)서비스
- KOTRA 등록 컨설팅회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이용 금액의 50%~70%(CYN 50,000, \$8,000 한도) 지원

신청 시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완료 전

신청 장소

KOTRA 국내 U턴기업지원센터, 해외 U턴지원데스크

세부내용

① 구조조정모델 제안(매각, 양도, 축소 포함)	② 청산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조조정모델에 대한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구조조정별 비용 추정 및 최적화 모델 도출 · 컨설팅 보고서[기업용, 사례 공유용(기업 비밀 삭제)] 2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청산전략 및 계획 수립 · 청산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실무 대행 : 동사회소집, 채권정리 공고, 신문보도, 청산 위원회 등 / 행정대행 : 심의비준, 등기말소 등 · 청산법무, 노무 서비스 등 · 컨설팅 보고서[기업용, 사례용(기업 비밀 삭제)] 2부
③ 축소 대행(downsizing)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축소 전략 및 계획 수립 · 축소를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축소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 컨설팅 보고서[기업용, 사례 공유용(기업 비밀 삭제)] 2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매각(또는 지분양도)전략 및 계획 수립 · 매각(또는 지분 양도)을 위한 실무, 행정 업무 대행 · 매각(또는 지분 양도)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 컨설팅 보고서[기업용, 사례 공유용(기업 비밀 삭제)] 2부 작성

05 | 지원제도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신청기업



KOTRA 등록
컨설팅회사

구조조정 컨설팅 추진

컨설팅회사

KOTRA 무역관



KOTRA 무역관
KOTRA 본사
유턴기업지원센터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

KOTRA 본사
유턴기업지원센터

KOTRA 본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심사

KOTRA 등록
컨설팅회사
KOTRA 무역관



KOTRA 무역관
KOTRA 본사
유턴기업지원센터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출

05 | 지원제도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KOTRA 본사
유턴기업지원센터

KOTRA 본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완료보고서 심사

KOTRA 본사
유턴기업지원센터 → KOTRA 무역관

완료평가 결과 통보

KOTRA 무역관 → 컨설팅회사

비용 지급

05 | 지원제도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제외업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업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업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 ~ 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익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제출서류

제출서류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참고3 참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서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 보고서 등)
 - 기타 산업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 지원대상 국내복귀선정기업 외의 기업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참고3 참조)
 - 국내법인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
 - 해외법인에 관한 서류(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재무제표 등)
 - 컨설팅 계약에 관한 서류(계약서, 컨설팅 보고서 등)
 - 기타 산업자원부가 정하는 서류

관련 문의처

-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
02-3460-7364
02-3460-7366
- 해외유턴데스크 (현지무역관)
베이징 : 86-10-6410-6162
상하이 : 86-21-5108-8771
칭다오 : 86-532-8388-7931
광저우 : 86-20-2208-1604
선양 : 86-24-3137-0770

05 | 지원제도 관세 감면

목적

해외사업장의 설비 국내 이전 시 발생하는 관세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U턴 선정기업

지원 내용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시, 5년간 100% 감면(2억 한도)
-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축소 시, 5년간 50% 감면(1억 한도)
※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해당

신청 시기

U턴기업 선정 후 신규·중고 자본재(설비) 수입 시

신청 장소

U턴기업 지원센터(도입물품명세 확인서 발급), 관할세관(관세감면 신청)

05 | 지원제도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목적

입지 및 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비수도권 입주 예정 U턴 선정기업 중 보조금 고시 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 내용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비고
입지	토지매입가의 10 ~ 40 % 이내	최대 42%(5억한도)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9 ~ 24% 이내	최대 31%

※ 최대 60억 지원

※ 입주지역별 ·기업규모 별 지원비율 차등적용

신청 시기

U턴기업 선정 후

신청 장소

입주 희망 지역 지자체 투자유치과

05 | 지원제도 해외인력 비자지원(E-7)

목적

핵심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특정활동사증 발급

지원 대상

- U턴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되어 5년 이상 근무
- 현지 KOTRA 무역관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지원 내용

- 신규 국내 고용인원(3개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의 5~10%의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 산정
- 선입국 허용(신·증설 예정 사업장의 예상 허용 인원의 50% 한도)

신청 시기

U턴기업 선정 후

신청 장소

KOTRA 글로벌일자리 사업단(고용추천서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비자발급)

05 | 지원제도 외국인력 고용지원(E-9)

목적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고용 허가

지원 대상

신규투자 금액(토지제외) 5억 원 이상인 U턴 선정기업

지원 내용

내국인 고용인원대비(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 산정(최대 50명 한도)

신청 시기

내국인력 고용 3개월 후 분기별 신청(신규투자금액 확인서 필요)

신청 장소

U턴기업 지원센터, 신·증설 투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05 | 지원제도 고용보조금 지원

목적

초기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U턴 선정기업

지원 내용

- 신청 후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1년간 1,080만원 한도 지원 (단 임금의 75%를 한도로 지급)
- 매회차 최대 100명 이내 지원가능

신청 시기

U턴기업 선정 후 2년 이내

신청 장소

신·증설 투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05 | 지원제도 수출촉진자금 융자지원

목적

U턴기업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투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U턴 선정기업

지원 내용

수출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투자 금액의 최대 90% 이내 융자지원

신청 시기

U턴기업 선정 후

신청 장소

수출입은행

05 | 지원제도 보증 지원(수출신용보증우대)

목적

국내복귀기업의 자금조달 시 신용보증 우대

지원 대상

지원대상 U턴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우대(최대 2배 이내)
- 보증료 할인(20%)

신청 시기

U턴기업 선정 후

신청 장소

한국무역보험공사

05 | 지원제도 법인·소득세 감면

목적

초기 원활한 사업정착을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용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축소 시,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소기업만 해당

신청 시기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 년도의 익년에 세액감면 신청

신청 장소

신·증설 투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유턴기업지원센터 연락처

국내

KOTRA 해외투자지원단 유턴기업지원센터(서울 서초구 현릉로 13)

 82-02-3460-7354

 E-mail price@kotra.or.kr

 82-02-3460-7364

 E-mail leesugmo@kotra.or.kr

 82-02-3460-7366

 E-mail lylayoun@kotra.or.kr

해외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	 86-10-6505-2310	 sh.lee@kotra.or.kr
	상하이	 86-21-5108-8771	 86-21-6219-6015	 yousun@kotra.or.kr
	칭다오	 86-532-8388	 86-532-7935	 sunghoko@kotra.or.kr
	광저우	 86-20-2208-1604	 86-20-2208-1636	 koree@kotra.or.kr
	선양	 86-24-3137-0770	 86-24-3137-0770	 xiaojin@kotra.or.kr
	다롄	 86-411-8253-0051	 86-411-8253-0051	 goo2cu@kotra.or.kr
일본	오사카	 81-6-6262-3831	 81-6-6262-4607	 kmkim@kotra.or.kr
미국	L A	 1-323-954-9500	 1-323-954-1707	 jw2003@kotra.or.kr
베트남	호치민	 84-8-3822-3944	 84-8-3822-3941	 rhee100@kotra.or.kr
	하노이	 84-4-3946-0511	 84-4-3946-0519	 kimkdon@kotra.or.kr

홈페이지 : <http://ois.go.kr/uturn>



감사합니다